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. 2. 10 선고 2020가단78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1. 1. 13.

판결 선고 2021. 2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149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6, 15, 14, 13,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9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동규

별지